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71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이인선

한기호 · 김용태 · 김예지

김승수 · 최은석 · 정희용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 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 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 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 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보험금의 한도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험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로서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

험금이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이하 "미수령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수령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	②
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	
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	
도로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보험금의 한</u>
	도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여
	<u>야 한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금융
	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하
	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